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제1항)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림.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유 자료 확대(안 제17조 신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

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보육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임.

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등
(안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

1)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수행하려는 것임.

2)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대상 확대(안 별표 1)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되는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인정 대상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0.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제26조의3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2)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중전의 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한다.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중전의 사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를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2)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종전의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한다.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u>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u>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u>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u>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 ----- -----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u>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u></p>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
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
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

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
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
한 권한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1. ~ 16. (생 략)

<신 설>

17. ~29. (생 략)

② · ③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
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17. ~2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541